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9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



-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
- 근 거 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2조, 제29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1	장O선	98.04.08.	세종시 산울7로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	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로 반송

- 공고기간: 2026. 6. 9. ~ 2026. 6. 23.(15일간)
-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채은진(Tel. 042-480-399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